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기술보급법

주체106(2017)년 10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35호로 채택

제1장 과학기술보급법의 기본

제1조 (과학기술보급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과학기술보급법은 과학기술보급단위의 조직 운영, 과학기술자료기지의 구축, 과학기술자료의 보급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 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과학기술보급단위의 조직운영원칙)

과학기술보급단위는 과학기술의 보급기지, 전민학습의 거점이다.

국가는 과학기술보급단위를 종합적으로, 부문별, 지역별, 단위별로 조직하고 운영하도록 한다.

제3조 (과학기술자료기지의 구축원칙)

과학기술자료기지의 구축과 과학기술자료의 보존관리는 과학기술보급의 성과를 담보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과학기술자료의 수집 및 구축, 보존관리사업을 과학화, 규격화, 표준화하도록 한다.

제4조 (과학기술자료의 보급원칙)

과학기술자료의 보급을 바로하는것은 사회학습기풍을 세워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국가는 과학기술보급체계를 바로세우고 과학기술자료의 보급형식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전체 인민이 현대과학기술지식과 높은 기술기능수준을 소유하도록 한다.

제5조 (과학기술보급부문에 대한 투자원칙)

국가는 과학기술보급부문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늘리며 과학기술보급부문의 정보화,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도록 한다.

제6조 (과학기술보급분야의 국제적교류와 협조)

국가는 과학기술보급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과학기술보급단위의 조직운영

제7조 (과학기술보급단위조직운영의 기본요구)

과학기술보급단위를 바로 조직하고 운영하는것은 근로자들을 과학과 기술, 생산과 건설에 필요한 지식으로 습득시키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과학기술행정지도 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기능화된 과학기술보급단위를 내오고 정 상 적으로, 과학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과학기술보급단위의 구분)

과학기술보급단위는 종합적 , 부문별, 지역 별, 단위 별과학기술보급기지로 구분한다.

제9조 (과학기술보급망의 형성)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 기관은 내각의 승인을 받아 종합적 과학기술보급기지를 중심으로 부문 별, 지역별, 단위별로 과학기술보급망을 형성하여야 한다.

기관, 기 업 소, 단체는 자기 단위의 특성에 맞게 자체의 망을 형성하여 과학기술자료를 보 급할 수 있다.

제 10조 (과학기술보급단위의 조직)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부문과 지역, 단위의 실정에 맞게 과학 기술보급단위를 합리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보급단위 의 규모와 능력 에 따 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과학기술보급단위의 등록)

기 관, 기 업 소, 단체 는 과학기 술보급단위 를 과학기 술행 정 지 도기 관에 등록하고 운영 하여 야 한다.

등록하지 않은 과학기술보급단위는 운영할수 없다.

제12조 (과학기술보급일군의 자격)

과학기술보급일군은 과학기술자료를 수집 및 분석정리, 보급할수 있는 기술기능을 소유하 여 야 한다.

과학기 술보급일군의 기 준을 정 하는 사업 은 중앙과학기술행 정 지 도기 관이 한다.

제13조 (과학기술보급부문일군의 양성)

중앙교육지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보급부문의 일군양성 계획을 바로세우고 과학기술보급부문일군을 전망성있게 양성하여야 한다.

과학기술보급부문일군에는 과학기술자료의 분석, 정리, 보관, 보급과 같은 과학기술보급사업에 종사하는 일군이 속한다.

제14조 (과학기술보급부문일군의 재교육)

과학기술보급부문일군은 정해진데 따라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중앙과학기술 행정지도 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보급부문일군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재교육체계를 바로세우고 과학기술보급일군들을 정상적으로 재교육하여야 한다.

제15조 (과학기술보급단위의 운영)

과학기술보급단위를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보급계획에 기초하여 운영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실행하여야 한다.

과학기술보급단위의 운영에서 컴퓨터망의 구성과 운영, 컴퓨터망정보봉사, 컴퓨터망보안과 관련한 사업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16조 (과학기술보급단위운영의 개선)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보급단위의 꾸리기와 운영을 정해진대로 하며 그 운영을 개선하여야 한다.

과학기술보급단위의 설비는 과학기술보급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업에 리용할수 없다.

제3장 과학기술자료기지의 구축

제 17조 (과학기술자료기지구축의 기본요구)

과학기술자료기지의 구축은 과학기술보급을 위한 선차적요구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보급에 필요한 자료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수집정리하여야 한다.

제18조 (과학기술자료의 수요장악)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 부문, 자기 지역, 자기 단위의 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자료에 대한 수요를 정상적으로 장악하여야 한다.

제19조 (과학기술자료수집계획초안의 작성)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보급자료수요에 따르는 과학기술자료수집 계획 초안을 작성하여 해당 상급기관을 거쳐 중앙과학기술행정 지도기관에 제 기하여야 한다.

제20조 (과학기술자료수집계획의 시달)

국가계획기관과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제기된 과학기술자료수집 계획 초안을 검토하고 보장조건을 정확히 맞물림한 다음 과학기술자료수집계획을 기관, 기업소, 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21조 (과학기술자료수집계획의 조절변경)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달받은 과학기술자료수집계획을 승인없이 조절변경할수 없다.

필요에 따라 과학기술자료수집계획을 추가하거나 조절 또는 변경하려 할 경우 계획을 시달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과학기술자료수집계획의 실행)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자료수집 계획을 해당 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에 등록하고 월 별, 분기별로 실행하여야 한다.

제23조 (과학기술자료의 수집)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기관에 심의등록된 국내의 과학기술성과자료와 다른 나라의 과학기술자료를 부문별로 수집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은 자료기지구축과 보급에 지장이 없게 다른 나라 과학기술자료를 제때에 검열하고 승인해주어야 한다.

제24조 (다른 나라 과학기술자료의 등록)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른 나라 과학기술자료를 들여온 경우 부문별로 분석정리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25조 (과학기술자료의 번역)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다른 나라 과학기술자료에 대한 번역과제를 분담해주어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보급에 지장이 없게 번역과제를 제때에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제26조 (과학기술보급단위에 따르는 과학기술자료기지의 구축)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심의등록된 과학기술자료를 부문별, 지역별, 단위별에 따라 과학기술자료기지에 구축하고 새로운 과학기술성과자료를 종합적과학기술보급기지에 보내 주어야 한다.

과학기술자료기지 구축사업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이 정한데 따른다.

제4장 과학기술자료의 보급

제27조 (과학기술자료보급의 기본요구)

과학기술자료의 보급은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자료보급체계를 정연하게 세워 선진과학기술자료를 제때에 보급하여야 한다.

제28조 (과학기술자료의 보급방향)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기관은 과학기술발전전략과 과학기술발전계획에 기초하여 과학기술자료의 보급방향을 작성하고 기관, 기업소, 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29조 (과학기술보급계획의 작성과 등록)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기관이 시달한 과학기술자료의 보급방향에 따라 자체의 실정에 맞게 과학기술보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과학기술보급계획은 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에 등록한다.

제30조 (과학기술보급계획의 실행)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보급계획을 월별, 분기별로 실행하며 과학기술보급계획을 조절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학기술보급계획 실행률은 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등록하지 않았거나 확인을 받지 않은 과학기술보급계획의 실행률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31조 (종합적, 부문별, 지역별과학기술보급기지를 통한 과학기술자료의 보급)

종합적, 부문별, 지역별 과학기술보급기지를 운영하는 기관은 과학기술보급대상의 준비정도와 전공부문, 업종에 따라 다양한 과학기술자료를 수요대로 보급하여야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과학기술보급기지의 리용자수를 늘일수 있게 보급 형식과 방법을 부단히 개선하여야 한다.

제32조 (단위별과학기술보급실을 통한 과학기술자료의 보급)

단위별과학기술보급기지를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 단위 종업원들의 과학기술 지식수준을 높이며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를 원만히 해결할수 있는 과학기술자료를 제때에 정상적으로 보급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 단위의 특성에 맞게 종업원들에게 과학기술자료열람 및 과학기술학습과제를 바로 정해주고 그것을 정확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 (통보, 강의, 강연을 통한 과학기술자료의 보급)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통보, 강연, 강의를 통한 과학기술자료의 보급을 계획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강연과 강의는 해당 분야 또는 부문의 전문가를 준비시켜 할수 있다.

제34조 (축전, 전시회 및 전람회, 발표회, 토론회를 통한 과학기술자료의 보급)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축전, 전시회 및 전람회, 발표회, 토론회 같은것을 계획적으로 조직하며 그를 통한 과학기술자료의 보급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은 축전, 전시회 및 전람회, 발표회, 토론회에 출품된 과학기술자료를 정확히 심의평가하여야 한다.

제35조 (출판선전물을 통한 과학기술자료의 보급)

출판보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과학기술잡지, 과학교육영화, 소개편집물 같은 출판선전물을 리용하여 과학기술자료를 널리 보급하여야 한다.

출판선전물을 통하여 보급하려는 과학기술자료는 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36조 (과학기술자료봉사료금)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자료봉사에 대한 요금을 받을수 있다.

과학기술자료봉사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가격 기관이 한다.

제37조 (과학기술보급계획의 실행총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종업원들이 보급받은 과학기술지식 활용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과학기술보급에서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과학기술보급계획실행 정형은 생산계획실행 정형과 함께 월별, 분기 별로 총화하여야 한다.

제5장 과학기술보급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8조 (과학기술보급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과학기술보급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과학기술보급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과학기술보급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과학기술보급사업을 개선강화하도록 한다.

제39조 (과학기술보급사업에 대한 지도)

과학기술보급사업에 대한 지도는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기관이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기관은 과학기술보급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40조 (과학기술보급부문의 과학연구사업)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기관은 과학기술보급사업을 현대화, 과학화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제41조 (과학기술보급사업조건보장)

체신기관을 비롯한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보급사업에 필요한 통신,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42조 (과학기술보급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과학기술보급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감독통제기관은 과학기술보급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3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

정처 벌을 준다.

1. 과학기술보급단위를 제대로 꾸리지 않았거나 과학기술보급설비 및 시설물을 다른 사업에 류용하였을 경우
2. 과학기술자료수집계 획을 바로세우지 않았거나 제때에 시 달하지 않았을 경우
3. 과학기술자료수집 계 획을 미 달하였거나 계 획 실행률을 허위로 등록하였을 경우
4. 다른 나라 과학기술자료를 제때에 검열승인해주지 않았거나 번역과제를 집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5. 승인 또는 등록되지 않은 과학기술자료를 자료기지에 구축하였거나 보급하였을 경우
6. 심의 등록된 과학기술자료를 종합적과학기술보급기지에 제때에 보내주지 않았을 경우
7. 축전, 전시회 및 전람회, 발표회, 토론회에 출품된 과학기술자료를 정확히 평가하지 않았을 경우
8. 합의를 받지 않고 출판선전물을 통하여 과학기술자료를 보급하였을 경우
9. 과학기술보급계획을 바로세우지 않았거나 과학기술보급단위 운영을 정상화하지 않았을 경우
10. 과학기술보급사업에 필요한 조건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았을 경우

제44조 (형사적책임)

이 법 제43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